



# 규정

## 계약직원 임용 규정

문서번호	TWP-A223		
제정일자	2006. 03. 01.		
개정일자	2017. 02. 22.		
개정번호	2	페이지	1/4

### 목 차

부칙

작성부서	서무과	제정일자	2006. 03. 01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	승 인
직 책	담 당	기획예산처장						총 장
서 명								
일 자								



규정		문서번호	TWP-A223	
		제정일자	2006. 03. 01.	
계약직원 임용 규정		개정일자	2017. 02. 22.	
		개정번호	2	페이지

개정이력		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10. 02. 24.	- 1차 개정
2	2017. 02. 22.	- 계약직원 보수의 별도 기준 명시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223	
		제정일자	2006. 03. 01.	
	<b>계약직원 임용 규정</b>	개정일자	2017. 02. 22.	
		개정번호	2	페이지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계약직의 임용, 복무, 보수 및 기타 제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7.02.22.>

**제2조(적용범위)** 계약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임용)** ① 임용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임용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.  
 ② 계약직의 대우는 자격과 경력, 직무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  
 ③ 계약직의 임용기간은 1년 내지 2년으로 하되,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연봉액은 연단위로 조정 할 수 있다.

**제4조(복무)** ① 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교의 직원인사규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7.02.22.>  
 ② 계약직원의 보수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7.02.22.>

**제5조(보수)** 계약직원에 대한 보수는 자격과 경력, 직무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연봉제로 한다.

**제6조(해고)** 계약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.

1. 근무태도 및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.
2.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었을 때.
3. 무단결근 2회 이상 또는 지각, 조퇴가 잦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.
4. 기타 이 대학교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.<개정 2017.02.22.>

**제7조(해고의 예고)** 계약직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퇴직금 지급)**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의원퇴직, 당연퇴직, 권고사직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지급한다.

1. 평균임금 : 퇴직 전 3개월간의 기간 총임금/퇴직 전 3개월 일수
2. 퇴직금산출 : 평균임금×30일×근속일수/365

**제9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정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 대

	<b>규정</b>		문서번호	TWP-A223
			제정일자	2006. 03. 01.
	<b>계약직원 임용 규정</b>		개정일자	2017. 02. 22.
			개정번호	2

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7.02.22.>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